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제415~997	(건화번호)	전 결 유 정 조 / 랑 결 결 전 결 사 랑
처리기간	제 2 부 시 장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계장	법무담당관 (고시안심사) 종합계획계장 가로계획계장
기안책임자	권 완	김 정 길	조	

경유신조	각 안 참 조		
------	---------	--	--

계 목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

제 1 안 내부결재

1. 서울특별시 제 80 호 (75. 6. 3) 로 시행허가 된 연세대학교 (서대문구 신촌동 산 9~1)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인가를 학교 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 권한 으로 부터 별첨과 같이 모청이 있어 내용 검토한 바

2.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당시 허가 면적 2.916 평 중 면차적인 사업 계획으로 승회 785 평만 시공 착수코저 하는 것으로서

3. 본건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 4. 4) 의 권한 위임 취침에 따라 이를 별안과 같이 인가 고시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코저 하오니 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안 고시안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 호

고시안심사	1975. 9. 17	제 143	
심사자	법제계장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80호 (75. 6. 3)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 26조와 건설부 고시제 123호 (73. 4. 4) 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면 봉사실 및 연세 대학교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9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산 9~1

2. 사업의종류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연세 대학교)

3. 사업시행 면적: 785평 (약 2591m²)

4.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서대문구 신촌동 134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 천 환

5. 사업 착수, 준공 예정년월일

가. 착수 년월일 : 1975. 10

나. 준공 예정년월일 : 1975. 11. 30.

제 3 안 인가증 (안)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산 9~1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연세 대학교)

3. 사업시행 면적: 785평 (약 2591m²)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대문구 신촌동 134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 천 환

5. 사업기간, 착공 년월일 1975. 10.

준공 예정년월일 . 1975. 11. 30.

6. 인가 내용 : 별첨 인가 조건 및 도면 표시와 같은
위와 같이 인가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6조 제 1항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학교) 실시 계획
을 인가 함.

1975. 9.

서울특별시

제 4 안

수 신 서울특별시청

발신 시장

제 목 등 권

1. 당시 도시 계획 사업(학교) 실시 계획 인가를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고시 되었기 통보하니 업무 시행에 차질
없기 바라며.

2. 본 사업은 기허 시달된 감독 권한 기입 규정과 도시
계획법 제 4조에 의한 사무 취급 규정에 의거 인가 조건 및 실제
도서에 의하여 철저 감독할 것이며, 사업 완료 후에는
준공 조치 하고 결과 보고 하기 바람.

첨 부 고시문 사본 및 인가증 사본, 도면 각 1부.

제 5 안

수 신 총무처 장관 (문화공보실장)

발신 시장 (과장)

제 목 관(시)보 게재 의뢰

1. 아래와 같이 관(시)보 게재를 의뢰 하오니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 구분 : 고시

나. 관(시)보 게재 건명 : 도시 계획 사업(학교) 실시
계획 인가

다. 법적 근거 : 도시 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6조

첨 부 : 고시문 사본 2부 (1부)

제 6 안

수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천환 발신 시장
제목 동전

1. 연세법 제 96호 (75. 9. 8) 에 관련입니다.

2. 위대로 요청하신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
인가를 별첨 고시문 사본 및 인가증, 도면 표시와 같이 인가
하였기 통보하오니 본 계획도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구청장
의 지시 감독을 받아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공사 착수권 착공제 (예청공정료 포함)를, 준공후
에는 준공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 (감독관) 이
임명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4. 본 사업 집행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
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및 인가증, 도면 각 1부 끝.

인 가 조 건

1. 이 사업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신청 설계 도서에 의거 시행하되 다음 조건을 특히 준수함은 물론 도시 계획에 정하는 절차나 명령 또는 이에 관한 처분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축법에 의거 허가 받은 후 건축시공토록 할 것
3. 공사 집행에 따른 인접지의 피해 및 동행인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피해는 전적으로 시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4. 지구내 하수도 시설은 공공시설물위에 건물 기타 구조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에 지장 없도록 한다
5. 이 공사는 증도에 증단 또는 다시공하거나 변경 시공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기간의 연장, 기타 허가조건과 행정지시에 불응할 시는 관계 법에 의거 ^{인가 취소} 조치할 수 있다
6. 이 인가 조건과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시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7. 임목, 벌채 및 이식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할 것
8. 사업 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고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행자 부담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
 - 나. 공사 시행으로 인한 동행상의 피해
9. 위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인가를 취소할 것이며, 당시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끝.